

02 제351회 임시회 결과	08 농수축경제위원회
03 제12회 제주포럼	09 교육위원회
04 행정자치위원회	10 입법정보
0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 사무처 소식 /
06 환경도시위원회	청탁금지법 Q & A
07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 의정 소식

Dreamjeju21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발행일 2017. 6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전화 064-741-2235 | 팩스 064-741-2219 | <http://www.council.jeju.kr>



지금 제주는 강렬한 여름 성큼 | 한낮의 태양이 눈부시다. 6월 제주는 바다도, 오름도 밀려오는 여름을 맞으며 분주하다. <제주관광공사>

“제주의 갈등 해소 노력, 전국적 공감대 형성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년 제4차 임시회 제주 개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년 제4차 임시회가 6월 9일 오후 2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제4차 임시회 제주 개최는 신관홍 의장이 지난 3월 부산 시의회에서 열린 시도회의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 사드배치로 인한 제주관광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제4차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과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장은 제주 4·3문제 해결을 위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방안 조속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출해 제주의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감대 형성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강원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범정부 지원 건의의 건 등이 제출되었다.

신관홍 의장은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제주현안에 대한 정책 기조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제주공약



가운데 4·3희생자 배·보상 검토와 유족신고 상설화 지원, 그리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은 제주의 갈등해소를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의 공감대 형성이 과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힘”이라며,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역량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공약, 제주 미래 담보해도 준비 없다면 사상누각 신관홍 의장,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아무리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고 해도 준비가 없다면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이다.”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5월 19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씨앗을 뿌렸더니 아무 때나 싹이 나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온도, 적절한 물기가 깊숙히 배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받아들이 준비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개회사에도 강조했듯이 대통령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또 제주현안들이 정부 추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온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신 의장은 또 “도민 사회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이번 회기에서도 심사 보류됐다. 좀 더 많은 고민과 분석,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하고 “회기를 마치면서, 도민들의 찬반이 엇갈린 현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된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 의장은 “물론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반문하면서 “사람마다 원하는 것과 가치관, 생각이 차이가 있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화와 소통, 그리고 토론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을 선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소수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제5회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영주고등학교 단체부분 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가 주최한 제5회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결과 영주고등학교가 단체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단체부분 우수상에는 신성여자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영주고등학교는 제주 중·고교내 방한교복 도입 건의안과 해녀들의 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한 인권위원회 설립 조례안을 상정,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장려상에는 남주고등학교와 오현고등학교가 각각 수상하였다.

개인부분에서는 오현고등학교 김세현 학생이 의장역 최우수상을, 최우수 의원역에는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오덕미 학생이 차지했다.

특히, 이번 경연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5분 자유발언 제주어에서는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전지영 학생이, 영어에서는 제주제일고등학교 김지오 학생이 수상했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 심사는 1차 내용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하였고, 경연대회에서 단체상에 입상한 최우수 1팀과 우수 2팀의 학생과 지도교사에게는 여름방학 기간 중 해외연수의 특전이 부여되며, 의장역 2명, 의원역 6명, 5분 발언역



2명, 특별상 2명에게는 의장상이 수여됐다.

이번 경연대회는 5월 26일 하루 동안 10개교·105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 내·외의 문제 및 제주도정, 교육행정의 문제 등 다양한 제주지역의 문제들을 가지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새 정부 출범, 제주공약 이행 위한 공동협력 방안 모색 제주도-도의회, 2분기 정책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의 2분기 정책협의회가 5월 29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제주공약 이행을 위한 공동협력과 제주현안 과제를 풀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은 국정기조와 국정과제 확정과 함께 부처별 세부 실천계획이 마련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제주의 입장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정 주요정책과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 방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도와 도의회 간 공동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정책협의회의 취지이다.

신관홍 의장은 “지금 새 정부는 인사와 정책 모든 면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고, 책임은 크게 가지면서 권한과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자세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하고 “제주에 대한 공약이행이나 정책기조 또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도민 우선의 원칙에서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한 신 의장은 “우리 제주가 수많은 현안으로 둘러싸인 지금,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과 혁신적 대안 제시를 통해 제주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오늘 정책협의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제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의회에서 신관홍 의장, 윤준광, 김황국 부의장을 비롯 상임위원장과 각 당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도에서는 원희룡 도지사, 전성태 행정부지사, 김방훈 정무부지사, 김정학 기초실장, 문원일 안전실장 등이 배석했다.

제12회 제주포럼에 ‘의회세션’ 처음으로 개설

아시아 각국의 지방의회를 벤치마킹 기회 제공,
신관홍 의장,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귀결 기대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의회세션’이 처음으로 마련돼 아시아 각국의 지방의회를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세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

동북아시아의 지방의회는 지방특성에 맞는 입법기능과 행정부를 감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문화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아시아 여러 나라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효율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의회세션’의 취지이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활동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회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첫 의회세션을 준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다.

이번 제주포럼 ‘의회세션’은 6월 2일 오전 10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신관홍 의장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회 소속 전직 의원, 관계 공무원, 의정자문위원, 의회 옵부즈맨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지방의회의 발전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90분간 진행됐다.

의회세션은 좌장과 사회를 맡은 제주대학교 김성준 교수의 진행으로 백종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시키다 히로아키 한일친선의원연맹 간사장(일본 가나가와현의회 의원)이 각각 ‘아시아 지방의회의 발전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조 발표를 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백종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아시아 각 도시의 지방의회 간 협력과 교류, 그리고 세계평화와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존의 도시간 교류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아시아 지방의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백종헌 의장은 또 “아시아 지방의회 협의체는 일명 ‘아시아 지방의회 네트워크’로 명명하고, 동아시아권 지방의회가 우선적으로 동참하되, 향후 아시아권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그간 한·중·일에 집중되어 있었던 교류의 범위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 등으로 확장하여 각 나라의 지방자치체를 함께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시키다 히로아키 한일친선의원연맹 간사장은 기조연설에서 “가나가와현의회에서는 의원제안 조례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하고, “상점가 진흥을 목적으로 한 ‘상점가 활성화 조례’나 암 대책을 충실히 하기 위한 ‘암 극복 조례’, 또한 원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연에너지를 유용하게 활용해 나가기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등 촉진에 관한 조례’, 심지어 ‘수화’에 대한 현 민의 이해를 깊게 넓게 보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수화 언어 조례’ 등이 특색 조례”라고 밝혔다.

이어 패널들이 참가하는 토론이 벌어졌는데, 라스 안드레 리히터(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와 안영훈 한국지방자치학회 국제협력 부회장, 육동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오옥만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여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을 쏟아냈다.



신관홍 의장은 ‘의회세션’ 개막에 즈음한 인사말에서 “새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균형 발전이 지방자치의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제주포럼 의회세션이 각광을 받을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의회세션’ 개최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외연확장 등 ‘의회세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석 운영위원장,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감사패 수상

메가와티 전 대통령, 제주-인니 교류의 메신저 역할 기대감 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석 위원장이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 국내 유일의 웰스리조트 위(WE) 호텔에서 열린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가든’ 그랜드 오픈행사

에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받았다.

제주도와 인도네시아 간 다양한 협력관계를 지원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과 문화

성장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수상이다. 김태석 위원장은 오는 6월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2회 제주포럼 개최식과 세계지도자세션에 참석해 협력적 아시아의 담론을 제시하고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방안을 논의하게 될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방문일정을 함께 하면서 제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가교 역할을 도맡고 있다.

김태석 위원장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메가와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으로 인해 변화와 개선이라는 남북관계 대전환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 특임대사로서의 역할과 행보에 주목해보아야 한다면서,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제주포럼 참석은 국제 역학관계와 남북관계 변화와 개선을 위한 중요한 돌보리가 마련되었으며”, “명예제주도민이기도 한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제주방문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제주가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평화의 섬이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도민 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결과 나왔다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 T/F팀, 5월 15일 특위에 보고



의회 차원의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이 드디어 마련되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산하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은 5월 15일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도민 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4월 15일 19명으로 구성된 T/F가 출범하면서 약 1년 동안 5차례 워크숍과 2차례 연수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총 7장으로 구성된 보고서 내용은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주거정책 현황과 분석, 제3장 국내외 주거정책 분석, 제4장 제주 주택수요 분석, 제5장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중심의 주택공급 방안, 제6장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재정정책 방안, 제7장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정리되었다.

좌남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거정책은 그동안 의회의 노력으로 도의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는데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의회가 앞장서서 도민의 생애 주기형 주거정책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그동안의 활동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연구보고서는 주택관련 중앙정부의 시책에 대한 연구와 절충이 미흡하고 특례로 받아온 권한에 대한 활용이 미흡하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주거기본법 시행, 인구증가율 상승 등 최근의 여건 변화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총수요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 도에서는 조직 확충 및 후속 조치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부여받은 셈이다.

제주도의회-日 홋카이도의회, 관광객 유치 공동협력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일본 홋카이도의회가 양 지역 관광객 유치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에서는 일본의 특별자치지역에 해당하는 홋카이도를 연수하는 과정에서 홋카이도의회를 방문, 이같이 논의했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연수 중인 지난 5월 23일 홋카이도의회 엔도 렌 의장을 예방하여 신관홍 도의회 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홋카이도의회 간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희망하며 조만간 홋카이도의회에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충홍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홋카이도와 공동 협력하여 다원화된 관광시장을 개척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홋카이도·하와이 간 항공노선을 개설·연계하여 중국·일본·한국·미국 관광객을 염두에 둔 관광시장을 개척한다면 더욱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양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강조했다.

엔도 렌 의장은 홋카이도와 하와이 간 우호협정이 체결된 바 있으므로 우호협력도시 간 항공 등 관광네트워크를 강화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조언 요청에 대해 제주는 관광자원이 많으므로 지역의 생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그 이익이 지역 사회에 환원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24일 홋카이도 도청과 의회 실무단을 만나 홋카이도 종합계획과 지방자치 수준 등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했다.



함께 깊이 생각하고, 토론을 통해 만드는 정책

「숙의민주주의 방법론 활용 정책 개발 조례 제정 워크숍」 개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은 6월 1일 소회의실에서 '숙의민주주의 방법론 활용 정책 개발 조례 제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을 준비한 이상봉 의원은 그간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2공항, 신항만 건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등의 정책추진에 있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정책이 결정되기 전이 아닌 행정에서 결정한 후 사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찬반논쟁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숙의민주주의의 방법론 활용을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단순히 선호를 집합하는 다수결의 민주주의가 아닌 시민, 유권자 또는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자들이 자유롭고 동등한 상태에서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정책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방법론에는 타운미팅,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등이 있다.

워크숍에서는 송창석 박사(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숙의민주주의 방법론의 실제와 조례 제정 방향'에 관한 발제가 열려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을 위한 숙의민주주의 도입 현황과 국내외 숙의적 방법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봉 의원은 “그간 공청회와 주민설명회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며, 특히 “오라관광단지 관련 정책토론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사후적 차원의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그 대안을 찾는 연구를 통해 숙의민주주의 유용성을 인식해 오늘 워크숍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조례 제정 타당성을 판단하여 실제 제정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처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에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법령과 상충하거나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정비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수 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보호·지원개정조례안」은 공동체 문화 활성화 및 어르신을 공경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수 노인에 대한 생신 축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고자 윤준광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중복표현 삭제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전검사 업무의 대행규정을 신설하고, 검사 요원을 민간인으로 위촉하여 직접 검사를 하도록 한 사항을 전문가로 위촉하여 참여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원안 가결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둘째 자녀 대상 육아 휴직 시 그 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평정 대상 기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치경찰 근속 승진 인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 제안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노인 빈곤 해소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 촉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며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기초연금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가구소득, 공시지가 등 시도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등 노인 빈곤 해소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 채 운영되고 있는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에 대한 개선 대책 및 시도별 공시지가 반영 등 합리적 대안 마련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을 매년 고시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 지급률은 65.4%에 불과하고, 또한 시도별 지급률은 전남 81.2%, 서울 52.5%[2017년 2월 기준]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실정으로 기초연금의 당초 취지가 퇴색

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통계청]’에 의하면 2015년 제주의 가구소득은 4,066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2016년 가구소득은 4,181만 원으로 전국에서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기초연금 지급률은 62.7%로 서울(52.5%), 경기(59.4%), 세종(59.4%), 울산(62.5%)을 제외하고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傍證)이다.

이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에 대한 개선 대책 및 공시지가 반영 등 불합리한 선정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초연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률을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제3기 제주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여성정치포럼(대표 김영보 의원)에서 마련한 제3기 제주여성 리더십 아카데미가 6월 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종강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종강식에서는 총 4회차 가운데 3회차 이상 수강자에 대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료증이 주어졌다.

제3기 제주여성 리더십 아카데미에서는 여성으로서 최다선을 기록한 이미경 전 의원(5선 의원, 15~19대)으로부터 인생 이야기와 함께 정치 노하우 등을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마지막 강의에서는 제주출신 김은실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로부터 ‘여성 리더십과 권력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라는 주제로 여성 리더십과 권력에 관한 여성학적 접근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김영보 대표의원은 종강식에서 수료생들에게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대해 한번쯤 생각하고, 현실에서 정말 작은 변화라도 생겼다면 성공적인 아카데미였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기업의 CEO 등 여성 리더로서 다양한 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료생들은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시간이었다.”며 “특히 2강에서 전 세계의 여성 리더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는 고3 수능이 끝난 학생들



이 들어도 좋을 내용이라는 생각을 했다. 남을 탓하기보다 여성인 내가 실천해야만 여성들의 리더십이 향상된다는 것을 새삼 느낀 교육이었다. 감사한다.”고 수료 소감을 전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 일원화 해 다시 예측하라”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와 도에 9개 항목 심사보완 자료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5월 23일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주)와 제주도에 9개 항목의 심사보완 자료를 요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각기 다른 용수사용량과 오수발생량의 산정 기준을 일원화 해 다시 예측하고, 오수를 공공하수관로를 통해 배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도에 요청한 것.

또 상수도를 공급받아 지하수 사용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연도별 자본 조달 계획, 사회경제 분야에 끼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열안지오름 경관을 보전할 대안과 함께 한라산 등 주변 경관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신규 편입부지에 들어설 것으로 계획된 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층수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라관광단지를 건설할 경우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추진 시 미칠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계자본인 JCC가 2021년까지 6조2800억원을 들여 제주시 오라동 일대 357만5000㎡ 부지에 테마쇼핑몰, 국제회의전시장, 관광호텔 등을 짓는 도내 최대 규모 사업이다.

다음은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를 위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보완요구 자료이다.



▲ 용수사용량과 오수발생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오수전환율 적용 시 두 계획에 따른 예측량이 상이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09, 2015)을 기준으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오수전환율을 적용하여 용수 사용량을 산출하여 사업규모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시킬 계획을 제시할 것.

▲ 장기적 측면에서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시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제출.

▲ 지하수 대신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출.

▲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제주지역 사회·경제 분야(지역숙박업, 지역상권 등)에 대한 영향 예측 결과 제시.

▲ 홍수로 인한 하류지역 영향 예측을 태풍(나리, 차바)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하고 하류지역 재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 지하수 취수로 인한 하류지역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대책 제시.

▲ 사업추진 과정에 따른 구체적인(연도별 등) 자금조달 계획.

▲ 오라관광단지 진·출입을 위하여 교통량이 매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시내 주요 도로(애조로, 연복로 및 보건소사거리 등)에서의 교통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 신규 편입 부지에서의 사업 진행으로 인한 중산간 지역 경관 영향 저감 방안.

- 시설 규모 축소 및 층수 완화 등 검토

제주 환경영향평가 범위 대폭 강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 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각종 개발 사업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발면적이 15만㎡를 넘는 도시·택지개발, 대지조성, 주택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이었지만 개정 조례는 그 기준을 10만㎡ 이상으로 강화했다.

발전 규모가 154kW 이상이고, 길이가 5km 이상인 송전선로를 지상에 설치하려는 에너지개발사업자도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발전 규모 154kW 이상, 송전선로 10km 이상인 에너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다. 아울러 공유수면매립면적 1만㎡ 이상, 외곽시설 길이 200m 이상으로 규정됐던 항만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매립면적은 유지한 채 길이 100m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10만㎡ 이상(형질 변경 면적)에서 5만㎡ 이상으로 조정하고, 골재 채취사업도 10만㎡ 이상(채취 면적)에서 5만㎡로 각각 변경한다.

도의회는 왕복 2차로 이상으로 조성된 도로를 5km 이상 연장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반면 도의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과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해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조건을 달았다.

도의회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훼손이 많이 수반되는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를 강화했다.”면서, “또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기존의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5월 16일 애월읍 고내리 마레보 리조트를 방문했다.



▲ 위원회는 5월 16일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 조례 등 안건 심사



▲ 2017년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가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제351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 제·개정 심사를 했다.

김희현 의원이 제정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법률에 의한 위임사항과 제주도 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정 가결되었다.

문화 다양성은 지난 2001년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선언

과 지난 2005년 〈문화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협약〉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수호 노력을 선언한 결과 2014년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제주인 경우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급격히 다양한 문화의 접점에서 오는 섞임은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문화차이 속에서 다양한 소수자 문화와 주류문화 간의 갈등이라든가, 농어촌과 도시문화

의 격차 등으로 표출되자 우리 사회에 내포해 있는 여러 문화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토대 마련 및 질적으로 성숙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도지사가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 외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특히 주차난, 교통난, 소음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광호텔·가족호텔·호스텔 등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축소하는 등 허용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김희현 위원장과 김명만 의원은 “지난 2010년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 관광숙박업을 허용한 이래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했으면 이들 지역에서의 관광숙박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며, 지난 4년간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서 승인된 관광숙박사업 25건 가운데 20건이 도민이 신청한 것”이라며,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기업이 건설하는 숙박업은 허가해주면서 지역 주민들이 하려는 숙박업에 대해선 제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지사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휴관일·관람시간·교육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며, 관람료 면제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특히 이기봉 의원은 교육비에 대한 징수조항을 반영할 경우 반납과 징수기한 등 구체적인 조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례 개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도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한다

도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에서는 5월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청소년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영 제주시 남자 중장기 청소년위원장 소장이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했고, 관련 조례 및 제도적 논의에 대해서는 김동욱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장은 장선화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사무장, 이애리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 김석범 제주문화예술재단 본부장, 박성호 제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팀장, 제주도 문화정책과 손영준 과장이 참여, 현장과 정책적 현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희현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 예술섬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청소년 복지 차원을 넘어 청소년 생활문화 확대 및 문화적 소양 증진의 문화정책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최 사유를 밝혔다.

현재 제주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은 학교 중심 문화예술 활동이 주류를 이루며, 대부분의 지원이 학교 내 문화예술 교육에 집중되었다. 즉, 학교의 특별활동과 취미활동 수준으로 더욱 더 심층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이다.



또한, 학교 밖 문화예술지원 활동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형태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한정되어, 일반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분리되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로 학교가 아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일반 성인 대비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한계점을 재검토하며,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고 더욱 폭넓은 제주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 해녀 소득보전 수당 지원 근거 마련”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처리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의원)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된 주요 안건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70세 이상 고령 해녀와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소득보전을 위한 수당 지원과 도지사의 5년 단위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령 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소득보전 수당은 최고 20만 원, 신규해녀 소득보전과 어촌정착 지원금은 최고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은 허창욱 의원이 제출한 조례로서 제주 해안에서의 해양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를 통하여 해양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주도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화장품 등 도내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에 대하여 도민 및 지역사업체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수출진흥회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현재 조직 명칭에 맞게 수정하고 2011년부터 운영해 온 제주 수출의 날에 대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제주수산물 가공 산업이 나가야 할 길을 찾는다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심포지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제주수산물 가공 산업이 나가야 할 길을 찾아 나섰다.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 좌남수)과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는 5월 17일 롯데시티호텔 제주에서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및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수산물 가공 산업의 나가야 할 길을 찾는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내·외 수산업 여건 및 수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비전을 예측하여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전문가와 함께 제주수산물 가공 산업의 나가야 할 길을 찾는 데 의미가 크다.

심포지엄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수산연구본부장의 기초 강연과 박준모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3명의 ‘마케팅 관점에서 본 제주 수산물 가공 산업의 과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는 제주 수산물 가공식품 전시 및 품평회와 해양수산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 수산물 가공 산업의 미래 비전을 담은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현안보고 받아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의원)는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현안보고에서 제주도의 안전한 방역 자세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도내 축사시설 가축방역관 2명 배치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당초 3,400만원을 요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2,400만원이 삭감, 결국 1,000만원만 반영되면서 무산됐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축산물 반입·반출에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진단기관 설치 등 근거가 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조직의 문제도 있지만 도에서 일상적인 방역의지가 없다. 2017년에는(방역인력)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또, “일이 터지면 심각하다 느끼지만 일이 안 터지길 원하는 모습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H1NA 유형은 동남아시아 등 고온에서 연중 발생하는 고병원성이 특징이다. 제주도도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며, “조직체계를 확대개편하고 일상적으로 제도화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윤창완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오늘 아침(주간정책회의)에도 지사가 ‘국경에 준하는 방역을 한다지만 뭔가 미흡한 것 아니냐’며, ”조직과 인력, 예산 등과 관련해 ‘자구적 방역체제’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작은 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가과교 현장방문 실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 5월 16일 제35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박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가정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 가정에서의 학습 결손 등에 따른 학습 부진의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탈북 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복비, 체험 학습활동비 등 학교 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 ‘돌봄시민 제주어 영상물 제작 민간위탁 동의안’과 ‘고등학생 공학 사사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해서,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고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로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제고라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여겨짐에 따라 승인했다.

5월 18일에는, 도서 지역의 특성상 학생 수 부족으로 복식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과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교육 위원들은 도서 지역 작은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정성이 담긴 격려 물품을 전달하며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 시 청취한 사항을 바탕



으로 작은 학교 관련 교육 정책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여 도의회 차원의 해결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직원들 사랑 나누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있다.

바로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그 주인공.

교육위원회 현순희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은 4월 29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사회복 지시설 ‘주사랑 요양원’을 방문,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외부 화단 정비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이날 봉사에는 강성균 위원장과 박규현 의원이 동참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봉사의 의미를 더 크게 만들었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체봉사활동은 물론 개인별 복지 시설 후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따뜻한 나눔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학교 용역 근로자 운영체제 점검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춘광 의원이 5월 25일 의원실에서 학교 용역 근로자들과 만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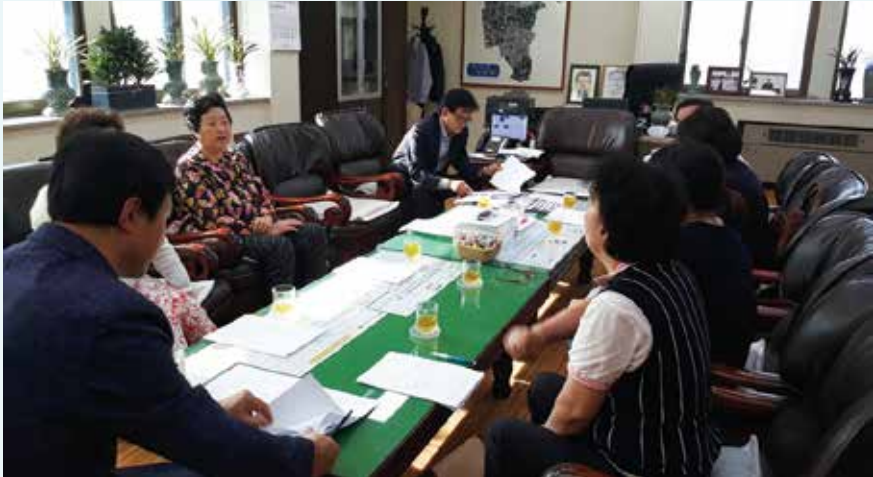
각급 학교 용역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운영, 처우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윤춘광 의원은 “학교 용역 근로자(미회원 등)는 학교 소속도 아니고, 용역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도 10개월, 11개월이 되는 경우도 많아 한 달이나 두 달 동안은 실직이 되어서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서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또 직장으로 옮겨가는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특히 “용역회사와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교직원과 교육공무직까지 모두 받는 명절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용역회사마다 계약한 내용이 다르다 보니 보수도 천차만별이며, 신분제에 대한 불안도 고스란히 떠안으며 근무를 하고 있고, 용역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 되다 보니,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학교 용역 근로자는 “용역회사가 아닌 학교와 근로자 간 직접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을 절실하게 요구한다”면서 “용역회사는 특별한 역할도 없는데 과도하게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행하는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용역 근로자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수체제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는 등 차별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고 “용역회사에서는 통상적인 수준에서만 이득을 취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정보



법령 제·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록 및 저당권등록 정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정보 등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033호, 2017.5.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제작자 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50만원으로 하는 한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 정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정보 등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4597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고 2017. 5. 18.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에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포함시키며,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4597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호자 교육의 방법 및 교육 내용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 나.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가 되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기준을 규정(안 제29조제2항 신설)
- 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우선 이용지원 개선 사항 등 반영(안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개정)
- 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기준 규정(안 제29조제4항 신설)
- 마. 어린이집의 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3조 개정)
- 바. 어린이집 내 보육 및 공공의 목적 외 설비 설치 금지(안 별표 1 개정)
- 사.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의 영유아 건강지도 교과목 학점 정정(안 별표 5 개정)
- 아. 어린이집 시설이 없는 경우 폐쇄조치 규정(안 별표 9 개정)
- 자. 어린이집 입소거부 및 강제퇴소 금지 신설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안 별표 9 개정)
- 차. 인가 및 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외(안 별지 제4호 및 제6호 서식 개정)

법령 해석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구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17-0162, 2017.5.10. 민원인]

〈사례 예시〉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하 “집합건축물”이라 함)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학교등출입문과 집합건축물의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의 직선거리는 75미터 이상이나 집합건축물 부지(건축물대장상 대지를 말함. 이하 같음)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75미터 미만일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은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학교등출입문과 집합건축물의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의 직선거리는 75미터 이상이나 집합건축물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75미터 미만일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은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호텔, 여관, 여인숙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어 2017년 2월 4일 시행된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제6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법 부칙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같은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함)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9조를 인용한 경우 교육환경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같은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7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중 하나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12월 22일 법률 제13594호로 개정되어 2016년 3월 23일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신설된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관광숙박시설로서 같은 항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않는 요건으로 관광숙박시설이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학교등출입문과 집합건축물의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의 직선거리는 75미터 이상이나 집합건축물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75미터 미만일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은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

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등 참조),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는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해야 하는 관광숙박시설의 경계를 명시하고 있고 않으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인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관광숙박시설은 해당 시설의 부지 내에서 숙박 외에도 다양한 부대활동이나 영업이 가능한 시설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건설장소, 총 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참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으로 관광숙박시설의 대지가 도로에 연결할 것(가목), 관광숙박시설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라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경계는 그 시설 부지의 경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4호에서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은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숙객들이 차량 또는 도보로 이동하는 건축물 바깥의 공용공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지에 관한 기준과 공용공간의 구조 등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관광숙박업으로서의 업태(業態)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의 경계는 그 시설 부지의 경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집합건축물의 출입구, 주차장, 계단 등 공용공간 전체를 해당 시설의 부속시설로 보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학교등출입문과 집합건축물의 가장 가까운 부분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설이 위치해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주차장, 계단 등 공용공간 전체를 해당 시설의 부속시설로 보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러한 공용공간이 법령상 해당 시설의 등록을 위해 또는 사실상 해당 시설의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례 참조),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은 관광숙박시설의 부지 전체가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고, 관광숙박시설은 출입구, 주차장, 계단 등 공용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공용공간을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객실이 100실 이상이어야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는 경우일지라도 공용공간의 성격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학교등출입문과 집합건축물의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의 직선거리는 75미터 이상이나 집합건축물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75미터 미만일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은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된다

－ 지방세 4개 세목 위택스 온라인 신청, 승인문자 알림도 제공 －

□ 직장인 A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뚝’ 소리나는 소비자다. 작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신용카드별 할인 혜택을 꼼꼼히 따져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카드별 혜택을 받기 위해 월별 카드실적도 세심하게 관리하는데 각종 공과금 또한 각종 혜택을 받는 동시에 연체 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한다.

○ A씨는 “신용카드로 각종 공과금을 내기 때문에 연체하는 일이 없다.”라며, “다만 최근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잘 몰라 연체한 경험이 있다. 각종 세금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되면 납부기한을 잊는 등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고민 사례들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6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
- 그간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애플카드 등 국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 하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 징수법」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서비스 이용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16일부터 ①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②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 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월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카드사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승인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핀테크 발전 및 4차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중심의 지방세 납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기존 서비스에 지역난방요금 추가 실시, 올해 말까지 모바일 서비스 확대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요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통합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각의 감면대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이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기존 감면대상 서비스에 지역난방요금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실시하였다.
- 현재,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 및 지역난방공사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15. 4월부터 복지대상자들이 읍면동 주민센터(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를 이용하여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 * (’15. 4월~’17. 2월까지 신청 현황) 도시가스 222천 가구, TV수신료 61천 가구, 전기요금 133천 가구, 이동통신요금은 207천 명 등 총 623천 명(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
- 또한, 지난해 12월에 감면서비스 혜택 누락자를 년 1회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175천명(220천건)이 추가 감면서비스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5년 75천명 대비 133% 증가)
- 구체적으로 각종 요금감면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원하는 감면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신청절차는 (1단계) 개인정보활용 및 공인인증하기 → (2단계) 통신요금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 → (3단계)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 → (4단계) 통합감면서비스 신청정보 입력처리 → (5단계) 신청서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 온라인신청은 자동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하여 추가적으로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신청 결과는 복지로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감면 제공기관별로 처리기한이 달라 신청기관으로 직접문의를 하면 더 빠르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감면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와 강원의 상생발전 기대” 제주-강원도의회 의정교류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가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8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강원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분권화에 대한 권한과 위상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국내 지방의회와의 의정교류를 통한 상호간 우수 의정시책을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특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체결로 의원과 사무처 단위로 교류 분야와 사업을 설정, 주기적으로 교류 프로그램이 이뤄지며, 의정자문위원과 옴부즈맨 등 필요시에는 의정 관련 민간단체의 상호방문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교장 공모제 이대로 좋은가? 의원연구모임 법·제도개선연구회 정책토론회 개최

교장 공모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도입된 지 7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시행된 교장공모제의 성과와 개선과제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 김명만 의원)는 5월 30일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교장 공모제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덕남 국회의원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교장 공모제 추진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고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고재문 한라대학교 교수, 김순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중생 전 남광초등학교 교장, 이수배 전 제주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윤두호 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의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법·제도개선연구회 김명만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학교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 책임경영이 가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장 공모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의의 전당에 예술의 향기 가득하다

세계자연유산의 절경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세계인의 눈에 비친 제주의 아름다움을 담은 ‘세계자연유산등재 10주년 기념 국제 사진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진 27점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만나 아름다운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하는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아크릴화 30점을 같이 전시하고 있다.

작품 전시 기간과 전시 장소는 ‘세계자연유산등재 10주년 기념 국제사진공모전’ 입상작품이 5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의사당 현관 로비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 그리기 동아리 회원 작품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의사당과 의원회관 2층 연결통로이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사람을 담은 사진과 꽃과 과일, 풍경 등을 담은 아크릴화로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보는 이들에게 화사함과 문화의 향기를 선사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월 전시공간이 필요한 도민에게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보다 많은 도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의회 로비와 스카이 브리지에 전시시설을 도민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계획을 마련하여 꾸준히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해 오고 있다.

도의회는 그동안故 김수남 작가 사진전, 제주 청년작가 작품전, 4·3 희생자 추모 학생그림전 등을 잇달아 열어 의회 방문객은 물론, 관심 있는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도의회, 갯생이 모자반 수거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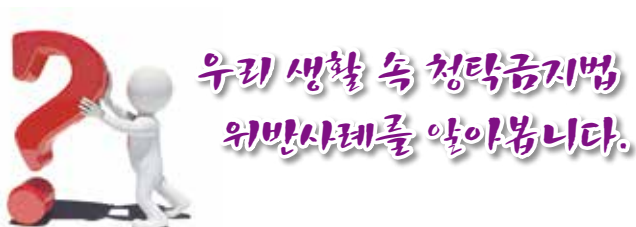


해안가 갯생이 모자반 수거작업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힘을 보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은 6월 10일 애월읍 하귀2리 가문동 포구를 찾아 해안면에 밀려온 갯생이 모자반과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최근 제주해역에 중국으로부터 갯생이 모자반이 대량 유입되면서, 악취를 유발하고 해양쓰레기와 뒤엉키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등 정화 활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탁금지법 Q&A



Q: 시간당 300만원을 받아온 ‘스타강사’ 서울대 교수의 강연료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어떻게 바뀌나?

A: 공직자 등의 외부 강연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과거 고위공직자들이 강연료 명목으로 사실상 뇌물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을 제공받아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나 직책과 관련된 강연이나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가했을 때 직급별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상한선은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연료를 받을 수 있다. 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수수의 강연료는 시간당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강연이 2시간을 넘을 경우 상한액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금액 기준이 넘는 강연료를 받았을 때는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강연료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출연료, 원고료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교수가 30만원만 강연료로 받고, 270만원을 원고료 명목으로 받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